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9호

「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30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’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겸직신고 서식 및 관련 규정 구체화(안 제5조)
- 나.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다.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라. 영리행위의 제한(안 제8조)
- 마. 의회출석 관련 사항 신설(안 제9조)
- 바.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○ 주 소 :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